

회원가입신청서

1. 인적사항 ※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상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사진)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음, 양)	
자택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직장명		직업(직위)		
이메일주소				
2. 입회사항	입회 경로			입회 지역(지부)
	지인추천 / 인터넷 / 강의강연 / 행사 / 기타(출판물) ()			
◎ 서 약 ◎ 1. 본인은 치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참가치관과 윤리도덕을 지키고, 근면, 성실하게 봉사하고, 선과 양심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속이고 이용사기하지 않으며 말은 바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가정,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본인은 치사랑 회원으로서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물질적, 심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의가 아니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법인에 그 어떠한 내용으로든 심적, 물질적, 책임과 손해보상을 민형사상에 걸어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사)치사랑도덕실천운동본부의 정관 및 규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단법인 치사랑도덕실천운동본부 귀중				

※ 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 (법인정관 및 운영세부규정에 근거)

운영세부규정 제2장 제9조 (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모든 회원은 제4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앙본부(이사회) 및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은 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 ② 단, 법인이 시행하는 치사랑상(모범인표창)에 선정되어 이를 받은 자는 입회신청서 제출 없이 회원으로 인정되어 일반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③ 1년 이상 일반회원으로서 회비,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치사랑 홍보활동과 법인의 목적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교육, 봉사, 연수, 행사 등에 꾸준히 참여한 회원은 중앙이사회 및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으로 한다.
- ④ 모든 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고 법인 활동 시 회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운영세부규정 제2장 제10조 (회원의 분류)

- ①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으로 분류하고 각각 그에 맞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② 일반회원은 월회비 3,000원, 혹은 연회비(가입회비) 36,000원을 납부하고 사업에 따라 자발적으로 후원 및 기부를 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월회비 10,000원, 혹은 연회비 120,000원을 납부하고 사업에 따라 자발적으로 후원과 기부를 할 수 있다.
- ④ 치사랑상 수상자는 가입신청서 없이 회원이 되며 일반회원의 자격과 의무를 갖는다.
- ⑤ 만18세 이하 청소년은 일반회원으로서 연회비의 의무는 없으나 사업에 따라 봉사를 해야 하고, 사업에 따라 자발적 후원과 기부를 할 수 있다.
- ⑥ 회원가입 시 가입신청서, 증명사진(6개월이내) 2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한다.

운영세부규정 제2장 제11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회원은 치사랑 도덕의 뜻에 동참하는 회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회원은 월3회 이상 치사랑 도덕의 뜻을 알리는 지역봉사활동, 상담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법인이 실시하는 교육, 강연, 행사가 있을 시 참여해야 한다.
- ④ 회원이 1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법인이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강연,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3회 이상 무단으로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참여할 수 없을 시 기부금(3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회원은 치사랑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써 지켜야 할 참가치관과 윤리도덕을 지키고, 근면, 성실하게 봉사하고 선과 양심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속이지 않고 이용사기를 하지 않으며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가정, 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회원강령을 정하여 서약한다.
- ⑥ 회원 간에 서로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서로 돕고 위하며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 치사랑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 본의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언행으로 남에게 물질적, 심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법인에 대해 그 어떠한 내용으로도 심적, 물질적 책임과 손해보상을 민형사상에 걸쳐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회원강령을 정하여 서약한다.

정관 제6장 제37조 (후원금)

- ① 임원 및 회원은 법인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일반인에게 후원금을 강요할 수 없다.
- ② 임원 및 회원이 개인의 이득을 위하거나 법인의 목적사업과 상관없는 후원금을 받을 경우 임원 및 회원에서 해임되거나 강제 탈퇴되며 즉시 후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③ 임원 및 회원은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법인의 일원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이용할 수 없다.
- ④ 임원 및 회원이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발되거나 위법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정관 제6장 제38조 (회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수 및 보상)

- ① 법인은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보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운영세부규정 제5장 제23조 (신분증, 회원증)

- ① 법인은 회원 등록 시 각 회원에게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임원이 된 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 ② 회원증과 신분증은 법인의 목적에 합당한 활동 시 착용하여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다.
- ③ 회원증 및 신분증은 재교부가 불가능하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하며 법인 탈퇴 시에는 반납해야 한다.

※ 회비 및 후원계좌 : 하나은행 129-910006-73005 사단법인 치사랑도덕실천운동본부

치사랑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아질 때 치사랑 법인은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게 되며 윤리도덕 사회를 만들고 건설하는데 책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단법인 치사랑도덕실천운동본부 귀중